

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314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김민규, 백인화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김재환, 이준호, 우종진

변론 종결 2024. 3. 21.

판결 선고 2024. 4. 1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1. 접수 제94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14.부터 2020. 9. 22.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C은 2020. 9. 22. 60,000,000원을 2020. 10. 31.까지, 140,000,000원을 2020. 12. 31.까지 상환하겠다고, 상환 기일을 경과할 시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2. 7.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1. 접수 제94991호로 C으로부터 C의 둘째 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23. 7. 28.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지연이자와 원금 순으로 총당하면 C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는 152,454,794원 및 이에 대한 2023. 7. 29.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C의 무자력

가. 적극재산: 1,033,000,000원

C이 2022.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C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아파트와 ②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 2022. 8. 4. C의 첫째 딸 F 앞으로 2022. 8.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가 마쳐짐)가 각 있었고,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70,000,000원(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② D아파트의 시가는 763,000,000원이다.

나. 소극재산: 2,566,127,972원

① 원고에 대한 2022. 8. 1.경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 232,673,972원

② G조합에 대한 채무: 547,195,000원

③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1,256,000,000원

④ 소외 I에 대한 C의 채무: 165,000,000원

⑤ J에 대한 C의 보증채무: 365,259,000원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5, 6, 7, 16, 17호증의 각 기재,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G조합, L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C이 피고에게 증여행위를 할 당시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가 그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불가분한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1. 접수 제94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용호

별지